

# 「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(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)」 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(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1일  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##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상품개선 지원사업 (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)
- 사업목적 :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
- 지원대상 :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(유형상품)  
※ 단, 아래 [참고1] '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' 해당 시 신청 불가
- 지원규모 : 600개사 (수행기관 3개사 X 소상공인 200개사 지원)  
※ 자부담금 납부 완료 기준 선착순 마감
- 지원내용 : 진단 및 컨설팅, 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, 부착제작물 지원 등
- 사업기간 : 선정일 ~ '25. 12. 31까지
- 추진일정



\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## 2

##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 :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)

○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\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신청제한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붙임1]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(※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)
불공정 행위	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
□ 중복제한 :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

세부사업명	
① (준비) 상품 개선 지원*	⑥ (실전) SNS활용패키지
② (준비) 콘텐츠 제작	⑦ (실전)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
③ (실전) 온라인 쇼핑몰 판매	⑧ (실전) 홍보
④ (실전) 라이브커머스	⑨ (도약) 스마트물류
⑤ (실전) 로컬상품관	

\* 상품 개선 지원(패키지 디자인, BI·캐릭터 디자인, 상세페이지) 내에서 1개만 지원 가능

\*\* 당해연도 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불가

### □ 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 지원

- (진단 및 컨설팅)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,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,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
  - 컨설턴트 및 디자이너 간 대면·비대면 컨설팅 1회 이상 실시
- (디자인 개선·제작) 진단 및 컨설팅 기반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BI·캐릭터 디자인 1종\*을 선택하여 최종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·제작 지원
  - BI·캐릭터 디자인 범위 : BI(CI) 또는 캐릭터 中 택 1
- (활용 제작물 지원) 디자인 개선·제작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활용 제작물 2종 지원\*
  - 활용 제작물 범위 : 소봉투, 명함 등 총 2종
  - \* 제작물 지원 한도 : 참여업체 자부담금 한도 내 지원, 제작물 변경 불가
- (온라인 입점 지원) 참여기업 희망 시, 온라인 입점 방법\* 또는 마케팅 전략 안내 및 교육 등 (자료 배포, 온·오프라인 교육 등)
  - \*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
- (A/S 지원)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/S 지원
  - \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### □ 사업예산 :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234.9만원(공급가액의 90% 내외)

#### < 사업비 구성내역 >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 [A]	정부보조금(90%)	①자부담금(10%)	②부가가치세 [B]	총 사업비 (부가가치세 포함) [A+B]
2,610,000	2,349,000	261,000	261,000	2,871,000

- 참여기업 부담 : ①모집부문별 지원 규모(공급가액 기준)의 10% 내외, ②부가가치세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 부담

\*\* 면세사업자,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

## □ 지원 체계



\* 수행기관-참여기업 계약 체결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

## 4

##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5. 3. 21(화) ~ 연중 수시 접수

※ 자부담금 납부 완료 기준 선착순 마감으로,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함

□ 신청방법 : 판판대로(<https://fanfandaer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수행기관 3개사 중 1개사를 필수 선택하여 신청·접수,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불가

□ 제출서류 :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기타 가점서류\*(우대 및 할당지원 참조) 등

### < 제출서류 목록 >

구분	내용	발급처
사업자등록증	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-
소상공인확인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국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국세청 홈택스
지방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민원24
신청확약서	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	[별첨2] 참고

\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3월 1일인 경우, 유효기간이 3월 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\*\* 회원가입 사업자번호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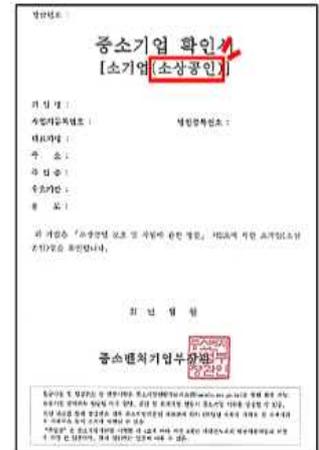
\*\*\* 가점서류는 [별첨 1]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

## [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- 중소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  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  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  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 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\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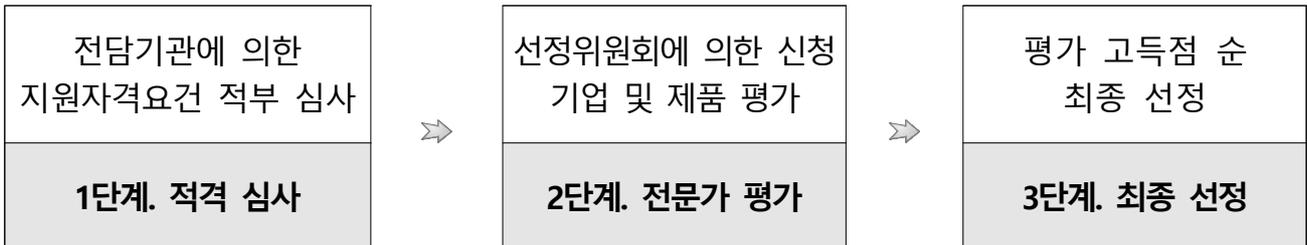


## 5

## 평가 및 선정

### 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- (평가절차) : 총 2단계 심사·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

### □ 심사 평가 방법

- (적격 심사)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  -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신청확약서
- (전문가 평가)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(5명 이내 구성)

### □ 최종 선정 안내

- 최종 선정 이후,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이후 절차 별도 안내 예정

유의사항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,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참여대상 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- 수행기관-참여기업 계약 체결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를 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됩니다.
  -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, 자부담금 입금 등)
-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.

 통합문의처 : 온관상담소(1899-0309)

**별첨 1****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** 선정 우대

- 우대사항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해당 시 +5점
② '22~'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화체육관광부(문체부)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③ '22~'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\* 본 상품개선지원사업은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(최근 3년)에 한하여 최대 300개사 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(전문가 평가 생략)

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

- 신청방법 : '판판대로'를 통해 사업 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,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
- 증빙자료

구 분	증빙자료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확인서</li> <li>○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</li> <li>○ 브랜드K 확인서</li> </ul>
② 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 기업·중장년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</li> </ul>
③ '22~'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-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</li> </ul>

**상품개선지원사업(BI·캐릭터 개선·제작) 참여기업 신청확약서**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

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“상품개선지원(BI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)” 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,

- 본 사업은 정부보조금 이외 ①자부담(공급가액의 10% 내외), ②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임을 확약합니다.
-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(사업종료 이후에도 해당)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,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-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식과 관련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-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, 성실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이며,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비 환수,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본 사업 참여 시, 수행기관이 본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과 ‘본 사업과 유사과업 또는 연관된 추가 과업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’ 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-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경우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 등)
- 최종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에 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되며, 자부담 납부기간 내 미납한 참여기업은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

2025. 00. 00.

서 약 자:   주식회사 ○ ○ ○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 표   ○ ○ ○ (직 인)

**참고1**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**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 
단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- 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

## 참고2

## '25년도 상품개선지원사업(B·캐릭터 디자인 개선·제작) 수행기관 목록

수행기관		기본정보			
A사 □	모트	기업명	모트	대표자	채호병
		주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16-1 (문정동) 2층 모트		
		문의처	02-3477-7793		
		홈페이지	<a href="https://www.d-mot.com">https://www.d-mot.com</a>		
B사 □	(주)디자인오브	기업명	(주)디자인오브	대표자	오정민
		주소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(가산동)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405호		
		문의처	1544-5523		
		홈페이지	<a href="https://www.brandio.co.kr">https://www.brandio.co.kr</a>		
C사 □	아이엠 커뮤니케이션	기업명	아이엠커뮤니케이션	대표자	성기택
		주소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, 센텀스카이비즈 A동 205,6호		
		문의처	051-925-0141		
		홈페이지	<a href="https://www.iamcc.co.kr">https://www.iamcc.co.kr</a>		

※ 수행기관 정보 및 포트폴리오는 판판대로 사이트 내 공고내용 확인